

외화획득용 원료 등 구매제도의 전자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lectronic System of Purchase Institution the Raw Materials for Earning Foreign Currencies

정윤세(Yoon-Say Jeong)

단국대학교 부교수(주저자)

정재승(Jason Chung)

단국대학교 연구전담 조교수(교신저자)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 론 |
| II. 외화획득용 물품관리제도의 고찰 | 참고문헌 |
| III. 전자무역 서비스 현황분석 | Abstract |
| IV. 로컬거래 전자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국문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외화획득용 원료 등 구매제도에 대해 전자화를 도입하게 되었다. 정부는 구매확인서의 전자화를 위해서 2011년에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외화획득용 원료 등 구매제도에는 구매확인서에 이어 2012년에 내국신용장도 전자화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전자무역이 로컬거래 절차의 전자화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화획득용 물품관리제도에 대한 선행적 고찰과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한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의 의무화 및 한국은행 무역금융 취급세칙의 개정으로 내국신용장의 전자개설 의무화에 따른 이론적, 법적 고찰과 로컬거래 절차의 전자화의 추진인 로컬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법적, 실무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분석하였다.

주제어 :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로컬거래 전자화

* 본 연구는 2012년도 단국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2011-5-35463)

I. 서론

무역의 성장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수출입 형태의 변화는 물론 무역업무의 처리방식에 있어서도 종이서류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무역방식에서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한 전자무역 방식으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승인제도는 수출을 포함한 광의의 외화획득행위를 대상으로 이에 합당한 제반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외화획득을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2011년 1월부터는 법인사업자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¹⁾되면서 국내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내수거래의 증빙에 관한 전자화가 추진되었다. 이에 외화획득용 원료 등 구매제도에 대해서도 전자화가 도입되었다. 2011년 1월 3일, 정부(지식경제부)는 구매확인서의 전자화를 위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고시하여 과거 종이문서로 발급하던 구매확인서를 2011년 7월 1일부터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이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및 온라인 유통이 지원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수출기업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구매확인서 사본을 전자파일로 생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세청의 구매확인서 확인을 위한 행정비용 절감 및 수출업체의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있다.

외화획득용 원료 등 구매제도에서 구매확인서에 이어 내국신용장도 전자화가 활용되게 되었다. 이는 한국은행이 무역금융 취급세칙/절차를 2012년 3월에 개정하였고 2013년 2월부터 내국신용장 개설/통지업무의 전자화가 전면 시행되었고, 2014년 2월부터는 결제업무도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자무역이 로컬거래 절차의 전자화가 추진되는 것이다.

전자무역 프로세스 도입은 신속성과 안전성, 투명성 등을 통하여 거래과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종이문서의 생략과 관련 비용의 절감은 거래과정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녹색성장 정책에도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로컬수출 절차의 전자화는 단순히 거래과정을 전자화함으로써 거래 당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체 프로세스의 전자화를 통하여 거래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자화를 통하여 축적되는 정보의 활용이라는 정책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²⁾

본 연구에서는 외화획득용 물품관리제도에 대한 선행적 고찰과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한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의 의무화 및 한국은행 무역금융 취급세칙의 개정으로 내국신용장의 전자개설 의무화에 따른 이론적, 법적 고찰과 로컬거래 절차의 전자화의 추진인 로컬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법적, 실무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분석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5항.

2) 조상현, 정재승, “로컬수출 절차의 전자화에 대한 연구”, 국제상학 제26권 제4호, 2011. 12. pp.241~260.

II. 외화획득용 물품관리제도의 고찰

1.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과 국내 구매제도에 대한 고찰

선행연구 중 김태인의 연구(2007, 2008)³⁾는 수출입공고의 품목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외무역법령 내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승인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이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가 수입된 후 국내에서 소비, 사용되거나 또는 국내에서 소비, 사용될 제품을 제조, 가공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 가공되어 다시 수출 등의 외화획득용으로 사용하거나 수출, 군납, 관광 등의 외화획득용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므로 일반물품과 달리 그 수입의 촉진은 곧 외화획득에 이바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산 원료, 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료, 기재의 수입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11조 제4항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시에는 수출입공고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에 대하여도 수입을 허용하며,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량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율소요량계산서나 대응수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를 첨부하지 않고 수입승인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부담금의 면제, 연지급수입대상품목 및 연지급기간 차등적용, 수입통관시 원산지표시의 면제 및 무역금융규정에 의한 수입자금의 지원, 관세환급 등의 금융,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수출을 포함한 광의의 외화획득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 등의 거래에 대하여 전자화에 대해 검토해 보면,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등을 구매하려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 및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구매확인서 제도가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지식경제부장관은 구매확인서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구매하려는 원료, 기재가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란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구매확인서는 대

3) 김태인,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승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3권 제2호, 2007, “외화획득용 수입승인제도 활용도에 관한 조사연구”, 제4권 제1호, 2008

4) 수출입승인대상물품 및 수출입지역 등의 한정

외무역법상 수출실적인정, 수출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세환급, 무역금융 용자대상 실적인정,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시 공급이행으로 인정 등의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외화획득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대외무역법상 관련규정은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의 수출입승인대상 물품이나 수입승인대상인 수입제한품목은 항공기 및 동 부품과 관련하여 HS 10단위 기준 116개 품목뿐으로 관세율표 전체 11,881품목의 0.97%에 불과한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대외무역법상 외화획득용 관련 규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환급특례법에서도 수출용 원재료와 내수용 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을 차등하게 적용하던 환급제도를 개정하여, 수출용 및 내수용 원재료 모두 수출에 공하기만 하면 환급해 주는 수출이행기간을 2년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의 차이가 큰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시 과대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용과 내수용을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에서는 외화획득용 및 이와 동일시되는 수출용 원재료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그 혜택 부분은 법령에 그대로 존속해 두고 있는 바, <표 II-1>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 II-1> 외화획득용 물품관리 현황

구분	물품관리	
대외무역법	수출입승인대상의 외화획득용에 대한 승인제도를 존속함으로써 외화획득용 인정주체 존재	
관세법	부과 징수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용 원재료 가격신고 생략 - 가격신고 생략된 수출용 원재료의 부과제척기간 2년으로 적용 -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할 무상반입 외화획득용 원재료에 대하여는 항공기 운임이 아닌 선편소포우편물 요금 적용
	통관 절차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승인면제물품 및 통합공고상 요건면제대상물품인 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하여 세관장 확인생략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특허보세구역 장치기간 완화 - 장치기간 경과로 인한 신고지연가산세 징수 제외 - 보세구역 장치외 신고시 담보생략 -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의 면제
식품 위생법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등 및 외화획득을 위하여 박람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서류검사 대상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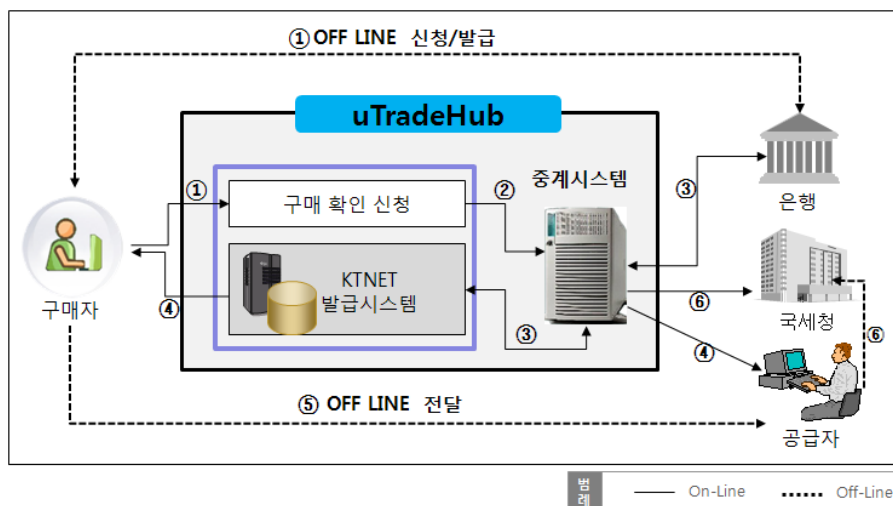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정리

<표 II-1>을 분석해 보면 대외무역법상 외화획득용 승인제도는 품목이 대폭 축소되어 적용되고 있는 수입제한품목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승인과 사후관리 등 외화획득용의 승인 주체에 의하여 관리가 되고 있다.

2. 구매확인서에 대한 고찰

외화획득용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EDI를 이용하여 신청 및 발급을 하는데, 2009년에는 약 93만건의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으며, 이중 36만건이 EDI로 발급되고 있으나 구매자와 공급자간 유통은 전자문서가 아닌 종이문서로 전달되고 있어 구매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발급 및 유통할 수 있는 전자화가 시급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과세첨부자료인 구매확인서 사본을 종이문서로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어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였다. 또한, 2011년 1월 13일에는 2011년 7월 1일부터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을 전자문서로만 할 수 있도록 대외관리무역규정도 개정 고시되었다.

첫째, EDI 사용자가 아닌 경우는 OFF-LINE으로 직접 은행창구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아 공급자에게 전달하고 공급자는 영세율 신고시 구매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부가세를 신고하였다. 둘째, EDI 사용자인 경우에는 uTH를 통해 구매확인서를 신청하고 발행기관은 uTH 중계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구매확인서를 전송하고, uTH 중계시스템에서 매월 영세율 정보를 생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첫째, 공급업체가 uTH 사용자가 아닌 경우 구매확인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없고, 둘째, KTNET발급 구매확인서가 아닌 경우 사후관리 및 국세청 영세율신고 정보를 생성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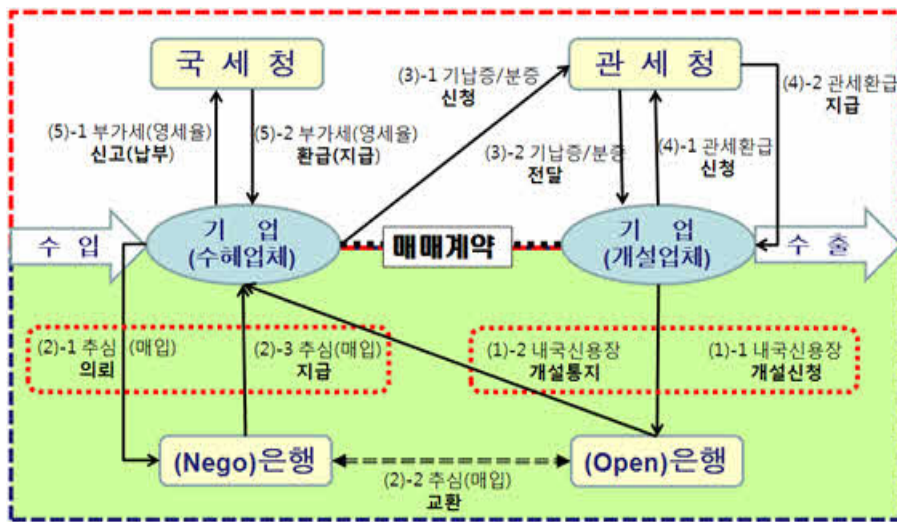


자료 : 2011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글로벌 물류·무역 정보망 구축(3단계)”, 제안요청서, p.20.

〈그림 II-1〉 구매확인서 발급시스템

3. 내국신용장 규칙에 대한 고찰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자가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외화획득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은행이 지급·보증한 국내용 신용장을 말한다. 우선 내국신용장의 용도는 첫째, 개설업체(구매자/수출자)는 관세환급신청(관세청)용이며, 둘째, 수혜업체(공급자)는 물품대금 회수용(은행), 부가세 영세율신고용(국세청), 기납증/분증 신청용(관세청), 무역금융 신청용(금융기관)이 있다.



자료 : 2012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글로벌 물류·무역 정보망 구축(4단계)”, 제안요청서, p.13.

<그림 II-2> 내국신용장 업무 흐름도

2012년 3월 한국은행은 내국신용장을 전자적 방식으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인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을 개정⁵⁾하였다. 첫째, 내국신용장 개설의 전자방식 일원화를 위해 기업의 내국신용장 개설 신청과 이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개설, 통지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한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일원화(‘13년 2월 시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제12조, 제15조)하였고, 둘째, 내국신용장 결제의 전자방식 일원화를 위해 내국신용장 결제를 위해 발행되는 환어음을 폐지하고, 내국신용장 결제가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14년 2월시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취급절차 제21조)

5) 개정배경은 어음, 수표 전자정보교환제도 시행에 따른 결제환경 변화 및 정부의 과세자료 전산화 추진 등으로 내국신용장 개설 및 결제방식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일원화할 필요와 서류교환방식에 의한 내국신용장 개설 및 결제제도 폐지에 있다.

〈표 11-2〉 내국신용장 주요 업무절차

No.	업무 절차	From	To	비고
1	수출자와 국내 공급자간의 물품공급 계약 체결	구매자	공급자	
2	외국환거래 약정	구매자	개설은행	외국환거래약정서
3	수출자가 개설은행에 내국신용장 개설신청	구매자	개설은행	
4	개설은행이 공급자에게 내국신용장 통지	개설은행	공급자	내국신용장 유효기간은 물품인도일로부터10일이내
5	공급자가 수출자에게 물품공급	공급자	구매자	
6	공급자가 수출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자	구매자	(D)
7	수출자가 공급자에게 물품수령증명서(영수증) 발행	구매자	공급자	계산서 발행일로부터10일 이내 발급(D+10)
8	공급자가 매입은행에 판매대금 추심의뢰	공급자	매입은행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제시기일 내에 매입의뢰(D+15)
9	매입은행이 공급자에게 매입처리결과통지	매입은행	공급자	
10	공급자 매입은행이 환어음 매입과 대금지급 (D일)	매입은행	공급자	매입은행이 공급자에게 대금지급(D+17)
11	공급자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추심의뢰	매입은행	개설은행	
12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추심의뢰서 도착통지	개설은행	구매자	
13	수출자가 개설은행에 무역금융차입, 자기자금결제 (D+3일)	구매자	개설은행	지급지시 및 출금통지
14	수출자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환어음 결제 (D+3일)	개설은행	매입은행	

자료 : 2012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글로벌 물류·무역 정보망 구축(4단계)”, 제안요청서, p.13.

내국신용장은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또는 외국환은행이 정하는 원자재 자금 및 완제품 구매자금의 융자한도 범위 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내국신용장의 개설조건은 원신용장이 양도불능 취소불능신용장이어야 하며, 원화 또는 외화 그리고 원화로 하되 개설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외화금액을 부기 조건으로 한다. 내국신용장의 금액은 물품대금 전액으로 하고, 원화로 하되 개설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외화금액을 부기에 의한 내국신용장일 경우 금액은 부기외화금액을 과거의 환어음⁶⁾ 대신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매입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⁷⁾

6) 서류교환방식에 의한 내국신용장 결제제도인 환어음 폐지(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9조 제2항)

7)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제3장 제14조 ①의 1, 2, 3

또한 물품의 인도기일은 대응수출 또는 물품공급이 원활히 이행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정되어야 하며, 유효기일은 물품인도기일에 최장 10일⁸⁾을 가산한 기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아울러 서류교환방식 결제시 개설의뢰인과 수혜자의 소재지가 원격지인 경우 적용되는 서류제시기간 관련 예외조치도 폐지되었다.(제14조 제1항 제6호)⁹⁾

마지막으로 대금결제방법은 개설의뢰인이 자체자금으로 결제(일람불 내국신용장)하거나 개설은행이 용자하여 결제(기한부 내국신용장)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발행 조건은 원수출 신용장 매입조건부 결제 등 수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어야 한다.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은 내국신용장을 전자문서로 개설하였다는 사실을 수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혜자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¹⁰⁾

개설은행은 지급거절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따라 결제해야 한다.¹¹⁾

Ⅲ. 전자무역 서비스 현황분석

1. 전자무역 서비스 구축현황

1) 전자무역시스템 구축

우리나라 전자무역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2004년 “무역업무 혁신을 위한 BPR/ISP”를 수립하고, 2005년부터 전자무역 서비스 사업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였다. 마케팅, 외환·결제, 상역, 물류, 표준·인증 등 무역관련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무역업체에게 단일창구(Single-Window)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무역문서의 유통성을 보장함으로써 단절된 프로세스를 연계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단축하여 업무의 신속성을 확보하였다. 전자무역 서비스는 uTradeHub 통합포털을 통해 무역포털, 통관지원 포털, 물류지원 포털, 마케팅 포털의 각 사용자들의 통합 로그인 기능을 구축하였다.

자체 시스템이 없는 (국내소재 외국계)은행과 물류업체들은 각각 은행전용 포털 및 물류지

8)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제3장 제14조 ①의 5

9) 서류제시기간은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장 5영업일 이내인데, 원격지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 기간을 7영업일 이내로 연장한다.

10)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제3장 제15조

11) 서류교환방식 결제시 적용되는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사유 폐지(제16조 제1항)

원포탈 ASP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전자선하증권(e-B/L)¹²⁾은 전자무역문서보관소에 등록, 저장됨과 동시에 소유권관리시스템(Title Registry)¹³⁾에 소유권의 등록, 관리기능도 구축하였다. 전자무역통합포탈(uTH)은 2008년 2월에 구축 완료된 후, 2010년 12월말 기준 17,122개의 사용자가 가입하여 사용 중이다. 월 약 26만건의 전자문서가 유통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약 2만개의 사용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표 III-1〉 단계별 전자무역 서비스 구축내역

과제명	주요구축내역
'05 전자무역서비스(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무역문서보관소 구축 - 보관기능, 증명기능 등 핵심기능 구현 - 중계시스템과 e-L/C 유통관리시스템 연계 ○ e-L/C유통관리시스템 구축 - 신용장업무 전자화 추진
'06 전자무역서비스(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 결제, 상역 중심 무역업체용 전자무역포탈 구축 ○ 전자문서 유통체계 구현 - 전자문서보관소고도화 - 전자문서간 유통 및 연계 정의, - e-L/C 고도화 ※ 사용자 UI는 인터넷기반 구현, 업무프로세스는 기존 EDI 기반
'08 전자무역서비스(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무역플랫폼구축 - 통합포탈 GateWay, - e-L/C ASP 구축 - e-B/L 유통관리시스템, - e-Nego 시스템 시범 구축 ※ e-Nego 시범구축 7종의 전자문서 한하여 적용(추가 개발/확산 필요)
'09 차세대 전자무역 구축(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ego외부연계시스템 구축 ○ e-L/C통합한도시스템, ○ e-L/C ASP고도화 ○ 수출입부대비용결제시스템 구축 ○ 항공화물운송장유통관리시스템 ※ 사용자 내부시스템 매입기능은 일부업종(현대차)을 대상 구현
'10 전자무역 신규서비스 구축/확산(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선하증권시스템의 독립성 확보 및 해외파트너 사용자 확대 ○ 중견·중소 기업 사용자를 위한 e-Nego 서비스 확대 ○ 전자무역문서 서식관리시스템 구축 ※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e-Nego 프로세스 확대 구축
'11 전자무역 신규서비스 구축/확산(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확인서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자료 : 저자 재정리

12) e-B/L(Electronic Bill of Lading : 전자선하증권) : 선사가 수출화물 선적 후 하주에게 선적 화물의 수령을 증명하고 운송 후 선하증권의 소지자(수입자)에게 화물인도를 약속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선사가 이를 종이문서로 발행하지 않고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행한 경우 이를 전자선하증권이라고 하며 기능 및 유통에 있어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13) Title Registry(T/R : 선하증권 소유권 관리 저장소) : 전자선하증권의 등록, 양도, 폐기 등 선하증권의 소유권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저장소로 전자선하증권의 전자적 유통을 위한 핵심시스템임.

전자무역시스템 구축('05~'11년)을 정리하면 첫째, 종이문서로 통지되던 수출신용장을 전자신용장(e-L/C)으로 통지하는 e-L/C 유통관리시스템과 신용장 잔액을 전자적으로 자동관리할 수 있는 한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둘째, 오프라인으로만 발급 및 유통되던 선하증권의 전자적 발급 및 유통을 위한 전자선하증권(e-B/L) 유통관리시스템 및 소유권 관리시스템(T/R)을 구축하였다. 셋째, 수출환어음 매입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e-Nego시스템 시범구축 및 항공화물 운송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넷째,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의 법적/시스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자무역 시스템과 송수신 모듈을 분리하고 해외파트너 사용자를 위한 포털을 영문화하였다. 다섯째, 전자무역문서 사용기업을 위해 전자무역 문서의 서식 등록/변경 및 전자문서 개발지침 배포/관리를 위한 전자무역문서 서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최근에는 구매확인서 발급 및 유통의 전과정을 지원 및 관리하고 부가세 영세율 신고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였다.

2. 전자무역서비스 이용현황

1) 전자무역서비스 사용자 현황

2008년 2월에 전자무역서비스가 구축 완료된 후, 2010년 12월말까지 17,122개의 사용자가 가입하여 사용 중이며, 12개 무역업무 처리서비스에서 월 약 26만건의 전자문서가 유통 및 보관되고 있다.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전자문서 보관건수는 각각 137,751건과 590,936건으로 구매확인서의 건수가 월등히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I-2〉 전자무역 서비스(uTH) 이용현황

무역부문 서비스	2009년			2010년		
	사용 업체수	송수신 건수	전자문서 보관건수	사용 업체수	송수신 건수	전자문서 보관건수
수입화물선취보증(L/G)발급	419	24,255	2,087	434	36,266	2,995
증명서(원산지증명, 상업송장증명) 발급	180	20,791	780,764	269	30,355	819,384
수출환어음매입(EDI)	563	13,563		638	27,547	
수출신용장(EDI)	886	23,156	121,065	1,047	37,251	126,717
수출신용장(e-L/C)	63	3,788	2,313	84	5,893	4,113
수입신용장	1,476	129,807		1,599	235,971	

무역부문 서비스	2009년			2010년		
	사용 업체수	송수신 건수	전자문서 보관건수	사용 업체수	송수신 건수	전자문서 보관건수
물품매도확약	743	10,447	15,132	58	20,447	15,156
물품대금회수	2,197	129,589		2,410	249,820	
물품대금지급	2,332	237,051		2,496	451,490	
내국신용장	764	59,310	124,411	835	108,355	137,751
구매확인서	8,221	362,842	808,896	3,483	462,147	590,936
요건확인	5,625	597,919	64,063	5,578	597,919	76,529
적하보험	-			14	14,845	500,813
e-B/L	-			3	29,067	231
e-Nego	-			1	5,010	464
공통(계산서 등 7종)	3,999	584,051	601,587	5,473	1,104,057	601,497
합 계	27,468	2,196,569	2,520,318	25,122	3,416,440	2,876,586

※ 사용업체 합계는 서비스 중복 사용업체수(11,100개)가 포함
자료 : KTNET 내부자료, 저자 재정리

2) 전자무역문서 관리 및 배포 현황

전자무역문서의 문서관리 및 배포는 수작업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업무담당자 PC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전자문서의 변경 및 배포가 다수의 관련기관에 즉시 반영이 되지 않을시 서비스가 장애를 발생하였다. 전자무역문서는 연간 1,120건의 변경 및 배포건수가 발생하며, 배포시 한번에 약 300개의 업체에 즉시 배포되므로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었다.

〈표 III-3〉 전자문서 관리 현황(2009년 연간기준)

업무구분	외환·상역	통관	물류	글로벌	합계
전자문서종류	214종	46종	267종	34종	561종
변경/배포건수	200	600	300	20	1,120
배포업체수	500	300	200	10	1,010
배포총건수	100,000	180,000	60,000	200	340,200
사용기업수	33,263	3,938	5,606	69	42,876
유통건수	26,068,118	18,643,060	198,294,628	325,886	243,331,692

※ 통관용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중계기관에서 화주 구간에 사용되는 문서임
자료 : KTNET 내부자료, 저자 재정리

전자무역문서 관리서비스를 받을 대상이나 활용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상역부문은 수출자/수입자, 구매자/공급자, 선사, 하주, 은행, 금융결제원, 상공회의소, 보험사, 보험공사, 조합/협회 등이며, 둘째, 통관부문은 관세사/자가 통관업체, 양도/양수업체, 승인기관, 추천기관, 검사·검역기관, 통일부, 우체국, 식약청, 은행연합회 등이고, 셋째, 물류부문은 항공사, 선사, 포워더, 보세구역, 컨테이너터미널, 보세운송업체, 특송업체, 하주, 검수회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하역업체, 항만청/법무부, 관우회 등이다. 전자문서 변경/개발 시 또는 전자문서 사용자 및 전자무역시스템 내부에서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자문서 요청 시 수시로 수작업으로 전자문서를 배포한다. 전자문서 최종본은 각 업무별(외환·상역/통관/물류)로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이력 관리 및 배포되고 있다.

3. 구매확인서 발급서비스 현황

한국은행은 구매확인서 관련 통계를 공표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은행으로부터 은행의 구매확인서 발급규모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통보받고 있으나, 그 통계에 대한 공식적 검증 절차 및 신뢰성 확보 절차가 미흡하여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구매확인서 발급기관을 통해 발행된 모든 구매확인서는 uTH 중계시스템을 통해 구매확인서 통합관리시스템에 보관한다. 하지만,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 및 은행이 발급한 모든 구매확인서는 구매확인서 통합관리시스템에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중계시스템에서 생성하던 구매확인서 영세율 신고정보를 구매확인서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생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UTH 사용자가 아닌 일반사용자의 경우 구매확인서 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구매확인서 발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급자 사업자번호를 기반으로 동보전송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표 III-4〉 2009년 On-Off line 구매확인서 발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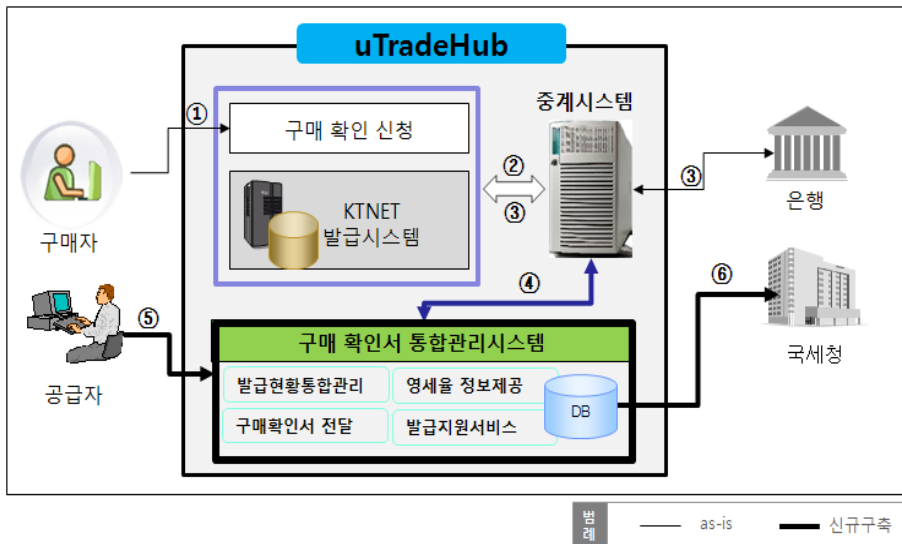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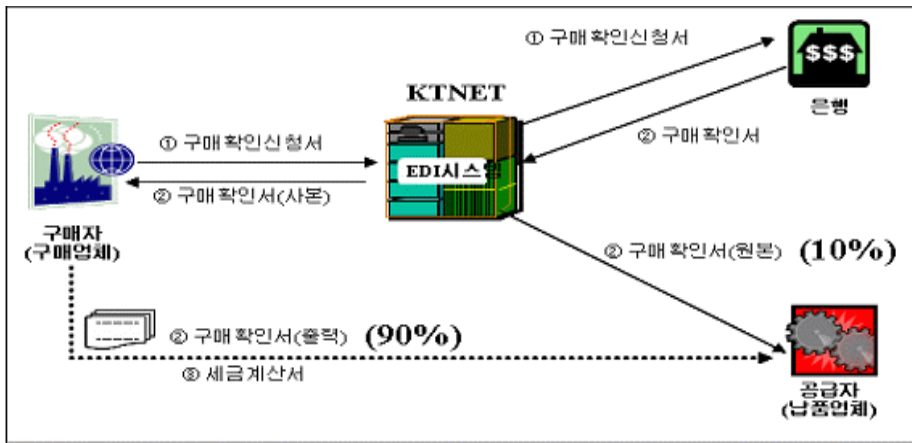
구매확인서 발급	종이발급 (Off-line)		전자발급 (On-line)		소계
	은행	은행	KTNET		
2009년	40만건	52만건	1만건		93만건

자료 : 2011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글로벌 물류·무역 정보망 구축(3단계)”, 제안요청서, p.19.

<표 III-5> KTNET 구매확인서 발급현황

구분	신청업체	발급건수	비고
2009년	193개	12,406건	동보 수신업체를 포함 총 이용업체 →1,544개
2010년	279개	43,992건	
합 계	472개	56,398건	

※ 2009년 6월부터 구매확인서 발급서비스 시작
 자료 : 2011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글로벌 물류·무역 정보망 구축(3단계)”, 제안요청서, p.19.



자료 : 2011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글로벌 물류·무역 정보망 구축(3단계)”, 제안요청서, p.19.
 <그림 III-4> 현행 구매확인서 발급, 유통 프로세스와 추가 구축 프로세스

4. 내국신용장 이용현황

내국신용장의 주요 업무절차(개설, 통지, 세금계산서, 인수증, 매입신청 등) 중 공급자가 주 이용자인 개설이후 업무 전자화율 개선이 시급하다. 내국신용장 전자개설율 47%에 비해, 전자적 방식에 의한 공급자통지 8%, 인수증발급 23%, 매입신청 10%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내국신용장 절차별 전자화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6〉 내국신용장 절차별 전자문서 이용현황

구분	전체건수(추정)	오프라인(추정)	온라인	
			건수	전자화율
물품매도확약서(구매자)	250,000	221,462	28,538	11%
내국신용장 개설(구매자→개설은행)	250,000	132,663	117,337	47%
내국신용장 통지(구매자→공급자)	250,000	230,556	19,444	8%
물품수령증명서(구매자→공급자)	250,000	191,400	58,600	23%
전자 매입(공급자→매입은행)	250,000	223,995	26,005	10%

* 2011년 기준 (전체 건수와 오프라인 건수는 추정치)

자료 : 2012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글로벌 물류·무역 정보망 구축(4단계)”, 제안요청서, p.14.

IV. 로컬거래 전자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로컬거래 전자화의 문제점

1) 6만여 공급업체의 로컬거래 전자화 시급

로컬거래 전면 전자화시 공급업체용 로컬거래 전용시스템이 필요하다. 로컬거래 전면 전자화시 전자문서 송수신 건수는 연간 690만건 이상으로 추정(구매확인서 3종 390만건, 내국신용장 12종 300만건)된다.

〈표 IV-1〉 로컬거래 전자화 이용현황

업무구분	온오프라인 전체건수(추정)	2009년		2010년		2011년	
		건수	전자화율	건수	전자화율	건수	전자화율
내국신용장 개설	250,000	108,357	43%	112,437	45%	117,337	47%
구매확인서 발급	930,000	530,761	57%	533,884	57%	875,012	94%

자료 : 2012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글로벌 물류·무역 정보망 구축(4단계)”, 제안요청서, p.14.

2) 로컬거래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사용자 불편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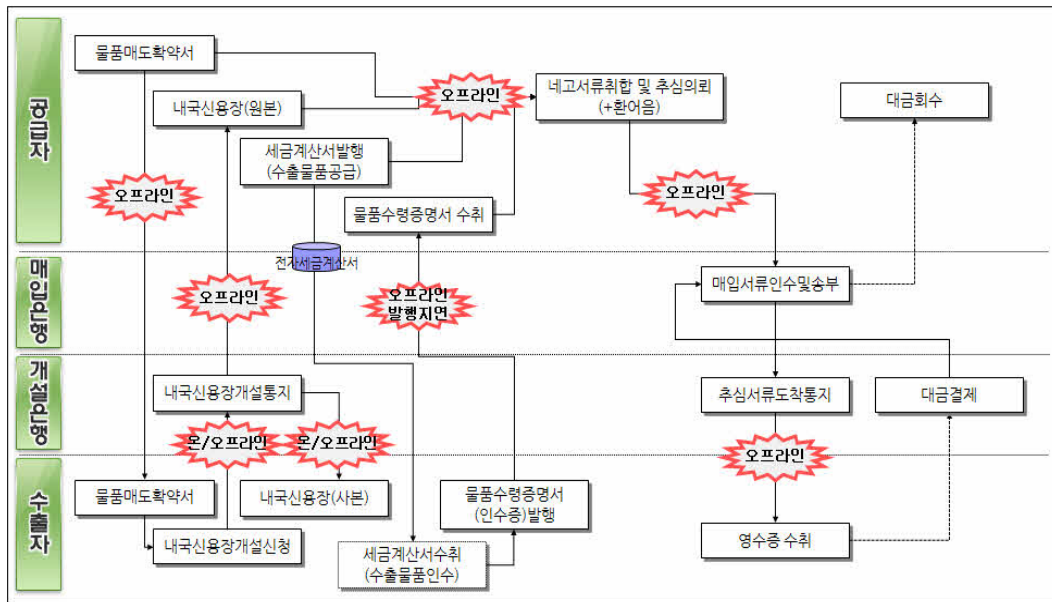
완전 전자화된 구매확인서에 비해 영세한 내국신용장 이용업체가 온·오프라인 병행에 따른 이용혼란 및 자동화효과가 저하되고 있다. 내국신용장 전체 업무절차의 오프라인(은행창구, 우편 등) 처리로 인해 공급자의 대금회수가 지연되고 있다. 공급자 사후관리 업무인 국제청 영세율 신고시 내국신용장 종이사본 제출 부담도 있다. 구매확인서는 ‘11년 7월부터 제출 면제 시행중이다.

3) 로컬업무 창구 이원화로 인한 이용혼란

로컬거래는 수출품 확보를 위한 내국거래로서 목적, 용도, 이용자가 동일하고, 동시에 구매자·공급자일 수 있으며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을 병행 이용하는 특성상 로컬 업무창구의 통합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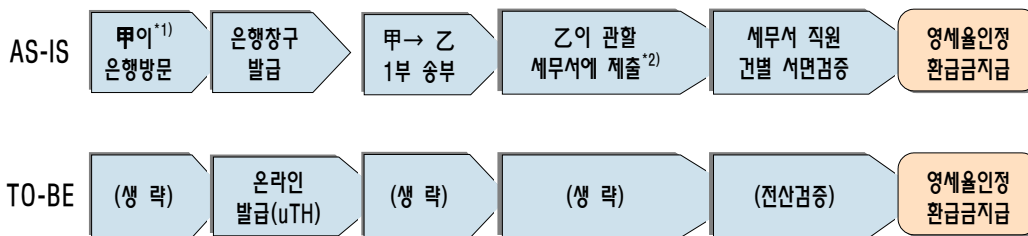
4) 금융권 어음교환소 폐지

금융권 어음교환소 폐지에 따라 내국신용장의 종이 환어음의 대체를 위해 내국신용장 전자매입 조기활성화가 시급하다.



자료 : 2012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글로벌 물류·무역 정보망 구축(4단계)”, 제안요청서, p.15.

<그림 IV-1> 현행 내국신용장 업무 프로세스



* 1) 甲 : 수출기업 *2) 乙 : 수출용원재료 등 공급자

<그림 IV-2> 구매확인서 프로세스

2. 로컬거래 전자화의 개선방안

1) 무역관련 법령의 개선

우리나라처럼 무역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에서 수출에 대한 관세상의 지원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대외무역법, 관세법, 환급특례법, 식품위생법 등 대표적인 무역관련법이 확실한 수출지원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함은 물론 정부의 통제가

충분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대외무역법의 외화획득용 관련규정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수출입승인과 관련된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수출입승인 면제규정 및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관련 내용을 대폭 축소 또는 조문정리를 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수출입승인제도와 관련하여 파생된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승인제도는 실질적으로 상당부분 사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혼란과 혼선을 주어왔다. 이는 수출입공고의 품목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외무역법령 내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승인제도의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관세법 등 법령의 개선이다.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에 있어서 신고납부제도를 원칙으로 부과지제도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바,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수입신고를 할 때 가격신고를 하도록 하여 관세의 재정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수입신고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수출용 원재료 즉 외화획득용의 구분을 현재와 같이 정부주도적이 아닌 민간의 자율신고제도로 운영하되 그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무역업자 및 신고인이 수출입통관의 신속 및 특혜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내수용임에도 외화획득용으로 신고하여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개선함으로써 무역원활화에 따른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관세법 등 특혜조항의 개정이다. 수출입통관이 완전히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수입신고가 서류없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수출용 원재료를 가격신고 생략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업체에 부담이 되지 않으므로 가격신고서 제출 생략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이 2년 또는 5년이 적용될 수도 있음을 책임조항으로 구현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세법 제226조에 근거하여 통관적법상 여부를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으로 허위 신고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하는 34개 법률 중 외화획득용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등 14개 법률을 제외한 20개 법률에 대하여 세관장이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¹⁴⁾, 이를 적용받고자 허위로 신고할 가능성을 제도적 보완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14)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3조

2) 로컬거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로컬거래의 전자화 전면시행 및 사용자 이용편의를 위해 공급자용 로컬거래 통합창구(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로컬거래 통합관리시스템(uLocal)은 공급자의 로컬거래 유통관리, 로컬 통지/조회, 사후관리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 포탈기능 및 UI를 개편하여 로컬거래 통합창구가 구축되었다.



자료 : <http://www.egume.or.kr>

<그림 IV-3> 로컬거래 통합창구 구축화면

(1) 로컬거래 유통관리 서비스 제공

① 로컬거래 통합 유통관리 기능

로컬거래 전체 업무현황을 내국신용장 번호별로 종합적으로 조회/관리/출력하는 기능을 구현(전자문서 송수신 내역 포함)해야 한다. 내국신용장 개설, 통지, 세금계산서, 물품수령증명서, 매입(추심)의뢰신청/결과, 사후관리 등의 내국신용장 업무 및 절차를 거래별로 종합관리해야 한다. 개설기관을 통해 전송된 내국신용장 개설정보를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관리 및 공급자 자동통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로컬거래의 내국신용장 통지(공급자)에 대한 업무알림 기능(예: 메일, SMS)을 구현하고, uTH 무역포탈 시스템과 uLocal 시스템간 로컬관련 업무 및 정보 연계(내국신용장 개설신청, 세금계산서 및 물품수령증명서 등록, 판매대금 추심(매입)의뢰 등록 기능 등)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내국신용장 관련 전자문서를 자사 전송기능 및 자료 다운로드 기능이 구현되고, 기존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시스템 중 영세율 신고자료를 통합적으로 구현하며, 내국신용장 전자화 전면시행에 따른 관련 전자문서(EDI) 설계 및 이의 반영이 필요하다.

② 물품수령증명서, 세금계산서 유통 및 관리 기능 제공

기존 물품수령증명서(인수증)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인수증 발행·유통정보 조회기능을 구현하며, 공급자의 인수증 발행요청 기능도 구현해야 한다. 기존 세금계산서(VATBIL) 전자 문서 수신 및 조회 기능과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및 물품수령증명서 스캔이미지 등록 및 은행 조회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③ 매입신청 관련문서 조회 기능 구현

내국신용장 매입신청시 판매대금추심의뢰내역을 기존 인수증 DB와 연계하여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은행에서 판매대금추심의뢰 번호로 의뢰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판매대금 추심의뢰 결과를 전자문서로 수신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내국신용장 잔액 관리 및 조회도 가능해야 한다.

④ 로컬거래 사후관리 기능제공

로컬거래(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 영세율신고 내역에 대한 조회 및 출력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2) 로컬거래 종합정보 서비스 제공

① 로컬거래 종합 통계 기능구현

거래처, 구매자/공급자 소재지, HS코드, 기간별, 통화별, 발급기관별, 용도명세별, 품목별, 근거서류 종류별, 전자문서별 등 종합통계 정보들이 조회되고, 로컬거래 자사 통계정보 조회 기능이 구현되고 있다.

② 로컬거래 외부 조회서비스

외부사용자가 로컬거래 통계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기관별 조회범위에 대한 권한 관리를 구현되고 있다.

〈표 IV-2〉 로컬거래 외부사용자 조회기능

외부사용자	조회기능 내역
지정부/한국은행	로컬거래 통계 조회
국세청	영세율 신고내역 및 근거자료 조회
외국환은행	내국신용장 개설현황, 내국신용장 매입현황, 매입첨부서류(인수증/세금계산서) 조회

(3) 로컬거래 관리 기능

로컬거래 현황관리를 위한 다음과 같은 관리자 기능이 구현되고 있다.

첫째, 로컬거래 시스템의 송수신 문서현황 및 시스템현황 파악 기능, 둘째, 로컬거래 통계, 오류 통계, 사용자 현황 통계 및 다운로드 기능, 셋째, 자사자료 전송에 대한 업체별 송수신 식별자관리, 넷째, 외부사용자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및 권한관리 기능

(4) 로컬거래 전자화 서비스의 개선 효과

전자무역서비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활성화와 신뢰성 제고 및 공정거래 감시를 가능케 한다. 특히, 영세한 하위 공급업체까지 전자무역 도입을 통해 수출공급망의 업무자동화 및 선진화도 가능케 한다. 로컬거래 정보의 통합관리로 유관기관간 로컬거래 정보의 활용이 가능해 지며,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관련 모든 로컬거래 전자화로 원산지증명 입증자료의 전자적 관리도 실현될 예정이다. 전체 로컬거래 전자화를 통한 수출활성화 및 중소 공급업체 이용편의를 위해 로컬거래 통합창구인 로컬거래 통합관리시스템(uLocal)의 구축이 추진되었다. 로컬거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영세공급업체의 전자무역 이용 확대를 통한 수출증대와 대, 중소기업간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표 IV-3〉 내국신용장 전자화 기대효과

무역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방문 불필요, 근거서류 제출면제, 수수료 절감 등 부대비용 절감 - 부가세 영세율신고시 사본제출 폐지, 관세환급 신청 간소화 - 기업간, 유관기관 등에 사본전달 생략에 따른 비용 절감 - 향후 기업간 거래정보로 활용 가능(FTA 원산지 증명 등) - 매입기간 단축에 따른 환가료 절감(평균 5일 → 2일)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서류 및 종이 환어음 폐지에 따른 인력운용 절감
정부,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부가세영세율 업무 전산화로 행정비용 절감 - 국내기업간 무역정보 DB 축적으로 국가경쟁력 및 거래투명성 확보 - 수출경기 및 중소기업 지원의 주요 지표로 활용 가능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절감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연간 약 250만장)

V. 결론

본 연구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과 국내 구매제도를 살펴보고, 이는 수출진흥시책으로 부가세 영세율과 부대비용 절감 등으로 영세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을 위한 대외무역관리규정과 내국신용장 전자발급을 위한 한국은행 무역금융 취급세칙이 법적 고찰을 통해 paperless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전자무역 시행에 법적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로컬거래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기존의 전자무역서비스 구축현황과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구축된 할 로컬거래 유통관리서비스, 로컬거래 종합정보서비스, 로컬거래 관리서비스의 주요 내용도 살펴보았다. 특히, 로컬거래 전자화 구축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활성화와 신뢰성 제고 및 공정거래 감시를 가능케 함과 유관기관간 로컬거래 정보의 활용이 가능해 지며,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관련 모든 로컬거래 전자화로 원산지증명 입증자료의 전자적 관리도 실현될 예정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선행연구의 미흡으로 실증적인 분석을 위한 설계가 미흡하였고, 최근 연도까지 이용현황은 살펴보았지만, 사용자 활성화를 위한 보다 심도 있는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 실증분석을 미처 실시 못한 것이 아쉬움이며, 향후 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경윤범, 한상필, “외화획득용 물품관리제도 실태 분석 및 효율적 방안 연구”, 관세학회지 제 12권 제3호, 2011. 8. pp.151~174.
- 김태인, 한상현,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승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8권 제4호, 2007. 12. pp.359~382.
- _____, “외화획득용 수입승인제도 활용도에 관한 조사연구”, 무역연구 제4권 제1호, 2008. 4. pp.95~114.
- 박문서, “내국신용장 거래 리스크의 수출보험 적용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2006. 11. pp.737~759.
- 박현희, “수출지원수단으로써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관세학회지 제12권 1호,

2011. 2. pp.67~80.

신상철, “수출금융지원 활성화 방안(내국신용장 제도를 중심으로)”, 기본연구 09-21, 중소기업 연구원, 2009.

서백현, “내국신용장의 전자화에 관한 연구”, 국제학술대회, 2006.

이제홍, “내국신용장(Local L/C) 개설 및 결제에서의 에스크로 시스템 적용에 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제7권 제3호, 2005. 9. pp.97~111.

이성식,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8-1집, 2008. 6. pp.204~245.

이봉수, “전자무역을 위한 상역부문의 혁신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학회지 제31권, 2006. 8. pp.137~153.

장근호, 허용석, “FTA와 관세환급제도의 상호작용이 교역과 내수물품의 경쟁조건(보호효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세무학연구 제29권 제3호, 2012. 9. pp.167~189.

조상현, 정재승, “로컬수출 절차의 전자화에 대한 연구”, 국제상학 제26권 제4호, 2011. 12. pp.241~260.

2011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제안요청서, “글로벌 물류·무역 정보망 구축(3단계)”

2012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제안요청서, “글로벌 물류·무역 정보망 구축(4단계)”

<http://www.egume.or.kr>

ABSTRACT

A Study on Electronic System of Purchase Institution the Raw Materials for Earning Foreign Currencies

Yoon-Say Jeong* · Jason Chung**

Recently, the government was introduced as currency for earning of raw materials purchasing system for electronic Government management of foreign trade in 2011, and revised regulations for electronic proof of purchase. In addition, the currency for earning of raw materials, such as procurement system in 2012, followed by electronic proof of purchase local letter of credit. The government electronic trading will be promoting local trading of electronic procedures. This study will be a preceding research on the goods control system for acquiring foreign currency and the obligation of using digitalized approval of purchase due to the revision of foreign trade law. Also, it will conduct theoretical and legal research regarding the obligation of digital establishment of the local L/C which is a result of amendments to the rules of operation for the Bank of Korea's trade finance. Further, it will analyze the legal and operational problems and its response pla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trad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which promotes the digitalization of the local trade process.

Key Words : paperless trade, e-Trade, uTradeHub, ulocal, local L/C, egume

* Main author,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 Correspondent author, Research Professor, Dankook University